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24조 972억 9천 1백만원
- 징수결정액 : 30조 8,051억 7천 8백만원
- 실제수납액 : 30조 161억 9천 6백만원
- 결손처분액 : 747억 7천 9백만원
- 미수납액 : 7,142억 3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7.4%(전년도 96.5%)임.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합 계	24,097,291	30,805,178	30,016,196	57,999	16,780	714,203	124.6	97.4
지방세수입	20,023,706	26,777,061	26,001,189	57,444	16,515	701,913	129.9	97.1
지방세	20,023,706	26,777,061	26,001,189	57,444	16,515	701,913	129.9	97.1
보통세	17,884,431	23,844,790	23,562,398	23,511	-	258,881	131.7	98.8
취득세	5,058,937	8,033,717	8,010,035	362	-	23,320	158.3	99.7
주민세	601,134	646,501	638,590	920	-	6,991	106.2	98.8
재산세	3,394,557	3,685,260	3,646,069	560	-	38,631	107.4	98.9
자동차세	1,186,241	1,223,093	1,164,093	1,371	-	57,629	98.1	95.2
레저세	42,702	4,439	4,439	-	-	0	10.4	100.0
담배소비세	580,150	594,186	594,186	-	-	0	102.4	100.0
지방소비세	1,824,280	2,077,641	2,077,641	-	-	0	113.9	100.0
지방소득세	5,196,430	7,579,953	7,427,344	20,298	-	132,311	142.9	98.0
목적세	1,938,270	2,232,727	2,203,038	745	-	28,944	113.7	98.7
지역자원시설세	304,768	318,625	316,084	43	-	2,498	103.7	99.2
지방교육세	1,633,502	1,914,103	1,886,954	702	-	26,447	115.5	98.6
지난년도수입	201,005	699,543	235,753	33,187	16,515	414,088	117.3	33.7
지난년도수입	201,005	699,543	235,753	33,187	16,515	414,088	117.3	33.7
세외수입	253,930	208,462	195,352	555	266	12,289	76.9	93.7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경상적세외수입	33,197	59,798	59,693	-	-	105	179.8	99.8
재산임대수입	12,974	10,622	10,586	-	-	36	81.6	99.7
공유재산임대료	12,974	10,622	10,586	-	-	36	81.6	99.7
사용료수입	1,186	910	842	-	-	68	71.0	92.5
기타사용료	1,186	910	842	-	-	68	71.0	92.5
수수료수입	787	1,028	1,028	-	-	0	130.6	100.0
증지수입	787	1,028	1,028	-	-	0	130.6	100.0
이자수입	18,250	47,238	47,238	-	-	0	258.8	100.0
공공예금이자수입	13,923	43,039	43,039	-	-	0	309.1	100.0
기타이자수입	4,327	4,199	4,199	-	-	0	97.0	100.0
임시적세외수입	220,251	146,643	133,990	555	266	11,832	60.8	91.4
재산매각수입	106,512	15,352	15,318	-	-	34	14.4	99.8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6,512	15,352	15,318	-	-	34	14.4	99.8
기타수입	106,350	110,767	110,502	-	-	265	103.9	99.8
채납처분수입	6	10	8	-	-	2	133.3	80.0
위약금	195	159	159	-	-	0	81.5	100.0
그외수입	106,150	110,598	110,336	-	-	262	103.9	99.8
지난년도수입	7,389	20,524	8,170	555	266	11,533	110.6	39.8
지난년도수입	7,389	20,524	8,170	555	266	11,533	110.6	39.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82	2,021	1,669	-	-	352	346.3	82.6
변상금	482	2,021	1,669	-	-	352	346.3	82.6
변상금	482	2,021	1,669	-	-	352	346.3	82.6
보조금	2,030	2,030	2,030	-	-	0	100.0	100.0
국고보조금등	2,030	2,030	2,030	-	-	0	100.0	100.0
국고보조금등	2,030	2,030	2,030	-	-	0	100.0	100.0
국고보조금	1,613	1,613	1,613	-	-	0	100.0	100.0
국가균특회계보조금	417	417	417	-	-	0	1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17,624	3,817,625	3,817,625	-	-	0	100.0	100.0
보전수입등	3,817,624	3,817,625	3,817,625	-	-	0	100.0	100.0
잉여금	3,465,276	3,465,276	3,465,276	-	-	0	100.0	100.0
순세계잉여금	887,852	887,852	887,852	-	-	0	100.0	100.0
법정잉여금	2,577,424	2,577,424	2,577,424	-	-	0	100.0	100.0
전년도이월금	352,348	352,349	352,349	-	-	0	100.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1	1	-	-	0	0.0	100.0
전년도이월사업비	352,348	352,348	352,348	-	-	0	100.0	100.0

※ 결손처분액 = 불납결손액 + 시효결손액,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 당초예산: 2조 9,219억 6천만원
- 예산증감: 추경예산 2,065억 4천만원, 간주예산 4억 1천7백만원, 예비비 1억 4천만원
- 예산현액: 3조 1,290억 5천 7백만원
- 지출액: 3조 852억 4천 5백만원
- 이월액: 2억 2천 9백만원
- 집행잔액: 435억 4천 8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4%(전년도 1.6%)가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 사유별 금액으로는 지출잔액 435억3천6백만원, 낙찰차액 1천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2백만원임.

〈 2021회계연도 재무국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총 예산	3,129,057	3,085,245	229	35	43,548	1.4
일반예산계	803,868	761,344	-	30	42,494	5.3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801,643	759,476	-	30	42,137	5.3
기본경비	2,225	1,868	-	-	357	16.0
재무활동	3	3	-	-	-	-
사업예산계	2,325,186	2,323,898	229	5	1,054	-
일반사업비	33,097	31,809	229	5	1,054	3.2
자치구교부금	2,292,089	2,292,089	-	-	-	-
재정보전금	1,781,631	1,781,631	-	-	-	-
징수교부금	510,458	510,458	-	-	-	-

< 2021회계연도 부서별 세출결산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재무국	3,129,056,685	3,085,245,480	229,350	34,563	43,547,292	98.6
재무과	805,161,102	762,204,524	-	30,261	42,926,317	94.7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795,710	511,326	-	-	284,384	64.3
2020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12,580	196,292	-	-	16,288	92.3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175,703	175,703	-	-	-	100.0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334,708	222,783	-	-	111,925	66.6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5,957	21,050	-	-	4,907	81.1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101,000	69,860	-	-	31,140	69.2
서울개발대상시스템 운영 및 공공매입추진	113,080	109,680	-	-	3,400	97.0
기본경비	1,759,756	1,421,812	-	-	337,944	80.8
인력운영비(통합편성)	801,642,608	759,476,018	-	30,261	42,136,329	94.7
자산관리과	8,981,884	8,772,344	-	-	209,540	97.7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7,000,000	6,996,632	-	-	3,368	100.0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816,164	1,613,546	-	-	202,618	88.8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18,354	114,800	-	-	3,554	97.0
기본경비	47,366	47,366	-	-	-	100.0
계약심사과	112,168	94,353	-	-	17,815	84.1
계약심사 업무추진	42,500	24,685	-	-	17,815	58.1
기본경비	69,668	69,668	-	-	-	100.0
세제과	1,786,021,075	1,785,748,327	97,350	4,302	171,096	100.0
재정보전금	1,781,630,523	1,781,630,523	-	-	-	100.0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020,215	2,020,215	-	-	-	10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86,920	115,173	-	-	71,747	61.6
마을세무사 운영	28,000	26,426	-	-	1,574	94.4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200	-	-	-	1,200	-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1,620,741	1,614,914	-	4,302	1,525	99.6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405,651	232,929	97,350	-	75,372	57.4
국고보조금 반환	2,565	2,565	-	-	-	100.0
기본경비	125,260	105,582	-	-	19,678	84.3
세무과	521,517,168	521,175,497	132,000	-	209,671	99.9
시세 징수교부금	510,458,159	510,458,159	-	-	-	100.0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172,474	172,474	-	-	-	100.0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50,532	796,863	-	-	53,669	93.7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82,991	157,682	-	-	25,309	86.2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92,700	186,978	-	-	5,722	97.0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	-	-	-	-	-
시세 세원발굴 지원	100,000	86,146	-	-	13,854	86.1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1,300,530	1,300,530	-	-	-	10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730,770	1,708,580	-	-	22,190	98.7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5,000,000	5,000,000	-	-	-	100.0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기반 컨설팅	503,770	327,400	132,000	-	44,370	65.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79,732	835,175	-	-	44,557	94.9
기본경비	145,510	145,510	-	-	-	100.0
38세금징수과	7,263,288	7,250,435	-	-	12,853	99.8
고액 체납시세 징수	458,620	449,518	-	-	9,102	98.0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1,940,024	1,936,273	-	-	3,751	99.8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4,787,078	4,787,078	-	-	-	100.0
기본경비	77,566	77,566	-	-	-	100.0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확대에 의한 성과상여금 예산 확보를 위하여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보수 ⇒ 성과상여금) 사업에서 14억 6백만원, 현원 증가에 의한 직급보조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보수 ⇒ 직급보조비) 사업에서 3억 2천 2백만원 총 2건, 17억 2천8백만원을 전용하였음.

다. 예산 이체: 해당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은닉재산 신고 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 예산 확보를 위하여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포상금 ⇒ 기타보상금) 사업에서 1건, 2,556천원을 변경 사용하였음.

다. 예비비 사용

- 공매 원인무효에 의한 배당금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1억 4천만원 총 1건을 지출 결정하여, 1억 4천만원 전액 지출하였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건, 2억 2천 9백만원

- 명시이월: 해당 없음.
- 사고이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한 준공 지연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사업비 9천7백만원,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우리 시컨설팅 사업 발주 지연으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1억 3천2백만원,
총 2건, 2억 2천9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2021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인력운영비(통합편성)’ 1개 사업에 4억 천7백만원,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공시가격조사’ 1개 사업에 16억 1천3백만원,
총 2개 부처로부터 2개 사업에 20억 3천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19억 9천7백만원을 집행하였음.

3. 기금결산: 해당 없음.

4. 채권현재액:

< 재무국 채권현재액(시유지 연부매각) 현황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관리부서	회계연도	건수	금액(원)	사 유
재무국 (자산관리과)	2005	200	385,520,580	시유지 연부매각 미수금 채권
	2015	2	47,556,740	
합 계		202	433,077,320	

5. 채무결산: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1년도말 재무국 관리 공유재산

- 토지 106,000천 m^2 74조 5,366억원
 - 건물 12,800천 m^2 8조 380억원
 - 기타 14,716,272건 41조 6,454억원
- 총 124조 2,200억원 상당의 금액

〈 2021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21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122,107,244	5,461,702	△3,348,858	124,220,088	
행정 재산	계	102,331,885	3,371,991	△3,026,085	102,677,791
	공용재산	11,645,853	668,231	△516,629	11,797,455
	공공용재산	78,913,852	2,612,581	△1,956,134	79,570,299
	기업용재산	10,070,432	32,587	△542,489	9,560,530
	보존재산	1,701,748	58,592	△10,833	1,749,507
일반재산	19,775,359	2,089,711	△322,773	21,542,297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21년도말 재무국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취득 등 : 1억 2천 1백만원

○ 매각·폐기 등: 4천만원

○ 당해연도말 총 수량: 59개, 현재액은 2억 2천만원임.

〈 2021회계연도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연번	정부 물품 분류 번호	품명	단 위	정 수	내 용 연 수	구 분	'20년 도말현 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21년도 말현재액			
								취득				처분						
								구 매	관 리 전 환	양 여 타	기 타 소 계	매 각	관 리 전 환	양 여 기 타 소 계				
합계						수량	52	21	1	-	-	22	-	14	-	1	15	59
						금액	139,182	73,911	47,716	-	-	121,627	-	16,675	-	24,235	40,910	219,898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대	2	8	수량	3	-	-	-	-	-	-	-	-	1	1	2
						금액	72,474	-	-	-	-	-	-	-	-	24,235	24,235	48,238
6	25101509	전기승용자동차	대	2	8	수량	-	1	1	-	-	2	-	-	-	-	-	2
						금액	-	55,075	47,716	-	-	102,791	-	-	-	-	-	102,791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대	36	6	수량	35	13	-	-	-	13	-	9	-	-	9	39
						금액	43,917	13,040	-	-	-	13,040	-	11,737	-	-	11,737	45,220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대	7	8	수량	7	-	-	-	-	-	-	-	-	-	-	7
						금액	15,539	-	-	-	-	-	-	-	-	-	-	15,539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대	7	9	수량	6	6	-	-	-	6	-	5	-	-	5	7
						금액	5,872	5,136	-	-	-	5,136	-	4,938	-	-	4,938	6,070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대	2	6	수량	1	1	-	-	-	1	-	-	-	-	-	2
						금액	1,380	660	-	-	-	660	-	-	-	-	-	2,040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참고)서울시 세입 결산 총괄 현황 〉

시세입 결산 : **52조 8,591억원**(예산현액 대비 110.7%)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㉑	징수결정액 ㉒	실제수납액 ㉓	불납 결손액㉔	미수납액 ㉕-㉖-㉗	비율	
						㉑/㉒	㉑/㉓
2021	47조 7,591	53조 8,875	52조 8,591	821	9,462	110.7%	98.1%
일반회계	33조 8,348	40조 782	39조 1,730	776	8,276	115.8%	97.7%
특별회계	13조 9,243	13조 8,093	13조 6,861	45	1,186	98.3%	99.1%
2020	46조 7,985	50조 7,669	49조 5,397	2,700	9,571	105.8%	97.6%
증감	9,606	3조 1,206	3조 3,194	△1,879	△108	4.9%P	0.5%P

○ 일반회계 : **39조 1,730억원 징수**(예산현액 33조 8,348억원의 115.8%)

- 지방세 : 26조 12억원(예산 20조 237억원 대비 129.9%)

- 세외수입 : 1조 1,153억원(예산 1조 7,527억원 대비 63.6%)

- 지방교부세 : 2,077억원(예산 2,068억원 대비 99.2%)

- 보조금 : 7조 1,267억원(예산 7조 1,839억원 대비 99.2%)

- 보전수입 등: 4조 6,877억원(예산 4조 6,310억원 대비 101.2%)

○ 특별회계 : **13조 6,861억원 징수**(예산현액 13조 9,242억원의 98.3%)

- 공기업 : 1조 7,622억원(예산 2조 8,304억원 대비 96.3%)

- 기타 : 11조 9,238억원(예산 12조 938억원 대비 98.6%)

세출결산 : 45조 3,337억원(예산현액 대비 94.9%), 집행잔액 1조 1,807억원(2.5%)

가. 과다한 세수추계 오차

-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4조 973억원) 대비 24.6%(5조 9,189억원) 초과 수납된 30조 1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3조 8,760억원) 증가한 수준임.

〈2021회계연도 재무국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예산대비		2020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합 계	24,097,291	30,016,196	5,918,905	124.6	26,140,165	3,876,031	114.8
지방세 수입	20,023,706	26,001,189	5,977,483	129.9	23,393,017	2,608,172	111.1
세 외 수 입	253,930	195,352	-58,578	76.9	180,233	15,119	108.4
보 조 금	2,030	2,030	0	100.0	1,670	360	121.6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817,624	3,817,625	1	100.0	2,565,245	1,252,380	148.8

※ 202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2조 3,480억원) 대비 17.0%(3조 7,922억원) 초과 수납된 26조 1,4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3조 1,249억원) 증가한 수준임.

※ 징수결정액(30조 8,052억원) 대비 결산액(30조 162억원)은 2.6%(7,890억원) 부족 징수되어 결손처분액(748억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7,142억원 수준임.

- 재무국 주요 세입원인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5조 9,775억원(수납률 129.9%)의 과다한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며, 반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586억원(수납률 76.9%)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등 세입 예산과목별 추계의 정확도가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과소한 결산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부실한 예산편성은 건전재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는데, 세입 예산과목별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적정 수준의 세입 편성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지방세수입 결산(23조 3,930억원)

○ 2021회계연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0조 237억원) 대비 29.9%(5조 9,775억원) 초과 수납된 26조 12억원으로 전년(23조 3,929억원) 대비 11.1%(2조 6,083억원) 증가한 수준임.

※ 2020회계연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19조 5,524억원 대비 3조 8,406억원 (19.6%) 초과 수납된 23조 3,929억원임.

< 주요 세목별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예산대비		2020년 결 산 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감액 (B-A)	비율 (B/A)		증감액 (B-C)	증감율 (B/C)
계	200,237	260,012	59,775	129.9	233,929	26,083	111.1
취 득 세	50,589	80,100	29,511	158.3	74,707	5,393	107.2
지방소득세	51,964	74,273	22,309	142.9	61,076	13,197	121.6
재 산 세	33,945	36,461	2,516	107.4	32,040	4,421	113.8
지방소비세	18,243	20,776	2,533	113.9	19,428	1,348	106.9
기 타 세 목	45,496	48,402	2,906	106.4	46,678	1,724	103.7

○ 지방세수입의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평균 17.6%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세수추계의 오차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1회계연도의 경우는 역대 최고 수준인 29.9%의 초과세입(5조 9,775억원)이 발생하였음.

○ 예산액 대비 초과 징수된 주요 지방세 세목은 취득세(2조 9,511억원, 58.3% 초과) 지방소득세(2조 2,309억원, 42.9% 초과), 재산세(2,516억원, 7.4% 초과) 등이며, 부족 징수 세목은 레저세(△383억원, 89.7%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무국은 매년 경제성장률과 부동산가격 및 주요 경기 동향 등 다양한 변수를 세입추계에 반영하고, 부동산취득세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력했다고는 하나, 2021회계연도 지방세수입 세입이 예산액 대비 6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은, 재무국의 지방세 세입추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행태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임.

< 최근5년간 지방세 세입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B-A)	증가율 (B/A)
2021	20조237억원 (전년대비2.4%증)	20조 237억원	26조 12억원	5조 9,775억원	29.9
2020	19조5,524억원 (전년대비7.3%증)	19조 5,524억원	23조 3,930억원	3조 8,406억원	19.6
2019	18조2,213억원 (전년대비6.6%증)	18조 2,213억원	20조 4,581억원	2조 2,368억원	12.3
2018	17조965억원 (전년대비9.9%증)	17조 965억원	19조 1,033억원	2조 68억원	11.7
2017	15조5,554억원 (전년대비10.1%증)	15조 5,554억원	17조 8,171억원	2조 2,617억원	14.5

※ 2022회계연도 지방세수입 예산액 : 23조 956억원(21년 대비 3조 719억원, 15.3% 증액 편성)

- 이는 필요 사업에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예산운영의 비효율적 요소로써,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위배되어, 매년 과다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등 서울시 예산의 주먹구구식 재정운용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바, 지방세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1회계연도 지방세수입 초과세입(5조 9,775억원),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조 8,712억원

① 취득세

- 취득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5조 589억원) 대비 58.3%(2조 9,511억원) 초과 수납된 8조 100억원으로 전년(7조 4,707억원) 대비 7.2%(5,393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수입 초과 세입(5조 9,775억원)의 49.4%(2조 9,511억원)를 점유하는 등 전년에 이어 가장 큰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음.

- 재무국에서는 본 세목의 초과세입 발생 원인으로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공시가격 상승, 공급 부족, 잦은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과다 구매(패닉바잉), 주택 종과세 제도 등 영향으로 세입 증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부동산 취득세의 초과세입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당초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재무국은 직전 5년 평균 40%(139.2%) 수준에 달하는 초과징수 추이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 징수전망액(5조 7,183억원)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2021회계연도 부동산 취득세 세입예산(4조 3,919억원)을 과소 편성한 데에 초과세입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음.
- 이러한 보수적인 세입추계 방식은 부동산 취득세의 초과세입(65%, 2조 8,529억원 초과세입 발생)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는 총 지방세 수입 초과세입(5조 9,775억원)의 47.7%에 달하고 있는바, 본 세목 세입추계 방식에 대한 재무국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취득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예산대비		2020년 결 산 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50,589	80,100	29,511	158.3	74,707	5,393	107.2
부 동 산	43,919	72,448	28,529	165.0	67,231	5,217	107.8
차 량	6,670	7,652	982	114.7	7,476	176	102.4

<최근 3년간 취득세 예산 대비 결산현황>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C=B-A	수납률 (B/A)
2021	50,589	50,589	80,100	29,511	158.3
2020	46,330	46,330	74,707	28,377	161.2
2019	42,738	42,738	55,908	13,170	130.8

<최근 5년 간 취득세 징수액 증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52,952	51,917	55,908	74,707	80,100
(증가율)	8.2	-2.0	7.7	33.6	7.2
부동산	47,756	45,395	49,372	67,230	72,448
(증가율)	11.8	-4.9	8.8	36.2	7.8
차량	5,196	6,523	6,536	7,477	7,652
(증가율)	-16.5	25.5	0.2	14.4	2.4

<서울시 자동차 등록 증감 현황>

(단위 : 대)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국산	외산			
2021년(A)	3,176,743	2,133,322	606,722	100,403	326,425	9,871
2020년(B)	3,157,361	2,151,325	561,659	106,504	329,943	8,930
증감(A-B)	19,382	-18,003	45,063	-6,101	-3,518	941

※ 자료출처:서울통계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차종별)

<연도별 취득세(부동산) 예산 추계 적용지표>

연도	유형별 점유비	거래량 증감률	과표 신장율	징수율	비고
2018	-	'01~'02년 평균거래량 대비 '03~'06년 평균 거래량 증감률*	※ 부동산 규제정책 발표로 거래 가격이 불확실하여 과표신장율 미반영 ¹⁾	최근5년 평균	*서울지역 투기지역 지정 전('01년~'02년)과 지정 후('03년~'06년) 기간의 거래량 증감률 적용
2019	최근3년 평균	'04~'08년 평균*	(주택)최근2년평균 (건물)최근3년평균 (토지)최근3년평균	최근5년 평균	*'18년 정책과 유사한 정책 적용 기간
2020	최근2년 평균	'08~'09년 평균*	최근2년평균	-	*'19년 시장상황과 유사한 기간
2021	최근2년 평균	최근 3년 평균	최근2년평균	-	*'20년 시장상황과 유사한 기간

※ 2017.8.2. 정부에서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정책 발표

[서울 부동산 거래량 현황]

항목 \ 유형	합계	주택	건물	토지
거래량	446천건	306천건	100천건	39천건
전년대비(증감율/건수)	21.4%↑(78천건↑)	24.9%↑(61천건↑)	11.1%↑(10천건↑)	22.6%↑(7천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계시스템(2021년말 기준)

〈 2018~2021년 서울아파트 평균매매 가격〉 (12월기준, 단위 천원, %)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전국 평균아파트 가격	514,584	396,410	351,787	325,014
서울 평균아파트 가격	1,151,469	893,100	827,228	717,749
전국전년대비(증감율)	29.8%	12.7%	8.2%	3.7%
서울전년대비(증감율)	28.9%	8.0%	15.3	8.8

*출처 : 한국부동산원

〈2018~2021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부과 현황〉 (단위: 건, %, 억원)

가격구간	적용세율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건수	취득세	점유비	건수	취득세	점유비	건수	취득세	점유비	건수	취득세	점유비
6억이하	1%	136,624	5,087	25	95,189	3,502	19	121,363	5,222	18	91,524	4,649	17
~9억이하	1~3%	30,512	4,790	23	24,179	3,788	21	44,162	6,838	23	26,711	4,581	17
~15억이하	3%	15,522	5,687	28	14,601	5,319	29	24,074	8,800	30	21,161	8,037	30
15억초과	3%	7,639	4,936	24	8,774	5,746	31	12,241	8,472	29	12,396	9,789	36
합계		190,297	20,500	100	142,743	18,355	100	201,840	29,332	100	151,792	27,056	100

* 점유비 : 연간 세액 합계 대비 가격구간별 세액 점유비 / 자료출처 : 세무종합시스템 주택 유상취득 신고자료

②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5조 1,964억원) 대비 42.9%(2조 2,309억원) 초과 수납된 7조 4,273억원으로 전년(6조 1,076억원) 대비 21.6%(1조 3,197억원) 증가한 수준이며, 금회 결산에서는 지방세수입의 28.6%를 차지하여 취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음.

〈 지방소득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분	2021년		예산대비		2020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51,964	74,273	22,309	142.9	61,076	13,197	121.6
종합소득분	6,526	8,517	1,991	130.5	8,258	259	103.1
양도소득분	6,336	14,478	8,142	228.5	9,223	5,255	157.0
법인소득분	12,606	20,963	8,357	166.3	18,284	2,679	114.7
특별징수분	26,496	30,315	3,819	114.4	25,311	5,004	119.8

○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분 및 법인소득분과,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매월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특별징수분, 부동산 등의 양도에 과세하는 양도소득분 등의 세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무국에서 제출한 각 세세목별 세입 결산 분석을 보면, 사업자등록 및 상용근로자 월 평균임금의 증가 등에 따라 종합소득분 초과세입(30.5%, 1,991억원)이 발생하였고,

·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는 6.4% 증가('20년 7,565명 → '21년 8,049천명)

· 상용근로자 월평균임금: ('20년) 345만원 → ('21년) 358만원, 3.1%↑

※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과, 조정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에 따라 양도소득분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초과세입(128.5%, 8,14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20년) 94,741만원 → ('21년) 108,250천원 14.3%↑

※ 수출 등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등 법인실적 개선으로 법인소득분의 초과세입(66.3%, 8,357억원)이 발생하였고,

· 수출 증가율: ('19년) △10.4% → ('20년) △5.5% → ('21년) 25.7%

· 3분기 상장법인 영업이익: ('20년) 76조 → ('21년) 143조, 88.2%↑

※ 상용근로자 수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특별징수분 또한 초과세입(14.4%, 3,819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지방소득세 추계방식을 보면 정부 국세 예산안을 기초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과 지방세 중 서울시 점유비를 적용하여 지방소득세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매년 10% 내외의 초과세입이 발생해오고 있으며, 2021회계연도의 경우에는 2020회계연도 징수전망액(5조 7,239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의 세입예산액을 편성(5조1,964억원)하여, 결산 결과 42.9% (2조 2,309억원)의 과다한 초과세입이 발생하였는바, 지방소득세 독립세화(2015년) 취지에 맞는 독자적인 추계방식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최근 5년간 지방소득세 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결산율 (B/A)
2021	51,964	51,964	74,273	22,309	142.9
2020	54,330	54,330	61,076	6,746	112.4
2019	52,385	52,385	58,058	5,673	110.8
2018	48,483	48,483	54,942	6,459	113.3
2017	42,297	42,297	46,395	4,098	109.7

③ (특별시분, 도시지역분)재산세

- 재무국 재산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3조 3,945억원) 대비 7.4%(2,516억원) 초과 수납된 3조 6,461억원으로 전년(3조 2,040억원) 대비 13.8%(4,421억원) 증가한 수준이며 지방세수입의 14.0%를 차지하는 규모임.
- 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세입(1조 7,185억원)은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본래 자치구세인 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서울시 세입과목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재무국 “재정보전금” 사업의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공동재산세 전출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경비

< 재산세(서울특별시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예산대비		2020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33,945	36,461	2,516	107.4	32,040	4,421	113.8
특별시분	16,343	17,185	842	105.2	15,227	1,958	112.9
도시지역분	17,602	19,276	1,674	109.5	16,813	2,463	114.6

<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교부 현황_결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교부액	1,751,371	1,577,165	1,300,009	1,165,213	1,077,375

※ 25개 자치구 균등 교부

-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어 매년 세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21년 공시가격 인상을 현황 >

(단위 : %)

연도	주택			건물	토지
	평균	단독	공동		
2021	14.87	9.83	19.91	1.37	11.54
2020	10.83	6.92	14.73	2.82	8.25
2019	13.99	13.95	14.02	2.90	12.07

- 다만, 재산세는 보유세로 경제여건 등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이 적고, 시가 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으로써,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임에도 매년 세입추계 오차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바,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보다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재산세 예산 대비 결산 추이 >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C=B-A	수납률 (B/A)
2021	33,946	33,946	36,461	2,516	107.4
2020	29,990	29,990	32,040	2,050	106.8
2019	26,151	26,151	28,411	2,260	108.6
2018	23,694	23,694	24,980	1,286	105.4

< 재산세 과세표준(부동산)>

구 분	재 산 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110조)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109조) • 주 택 : 시가표준액의 60%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공동재산세 과세대상은 항공기, 선박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됨(지방세기본법 제9조).

④ 자동차세

- 자동차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1조 1,863억원) 대비 1.9%(222억원) 부족 징수된 1조 1,641억원으로 전년(1조 1,686억원) 대비 0.4%(45억원) 감소한 수준이며 지방세수입의 4.5%를 차지하는 규모임.

< 자동차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예산대비		2020년 결 산 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11,863	11,641	-222	98.1	11,686	-45	99.6
소 유 분	6,151	6,241	90	101.5	6,102	139	102.3
주 행 분	5,712	5,400	-312	94.5	5,584	-184	96.7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의 ‘소유분 자동차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는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부담 성격의 ‘주행분 자동차세(자동차세 보전분 및 유가보조금 보전분)’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세입의 결손 발생은 코로나19로 감염 유행으로 인한 정유회사 업황 부진 (항공기 운항 감소)으로 유가보조금 보전분의 감소에 따른 것임.

※ 소유분 자동차세는 예산현액(6,151억원) 대비 1.5%(90억원) 초과 수납된 6,241억원으로 전년(6,102억원) 대비 2.3%(139억원) 증가한 수준임.

※ 주행분 자동차세는 예산현액(5,712억원) 대비 5.5%(312억원) 부족 징수된 5,400억원으로 전년(5,584억원) 대비 3.3%(184억원) 감소한 수준임.

< 서울시 자동차 등록 추이 >

(단위 : 대수)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등록 대 수	3,176,743	3,157,361	3,124,157	3,124,651	3,116,256
(증 감 률)	100.6%	100.9%	100.0%	100.3%	101.1%
자 동 차 세	6,241	6,102	6,022	5,940	5,924
(증 감 률)	102.3%	101.3%	101.4%	100.3%	103.0%

(국토교통부 통계, 2022.1월 발표)

- 한편, 자동차세(소유분) 선납(연납)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세액감면(10%) 규모가 257억원에 달하여 자동차세 세입결손 규모(222억원)를 초과하고 있는바, 선납에 따른 실익과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 규모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선납에 따른 감면율의 축소 또는 폐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동차세 연납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건수	선납전세액(A)	선납세액(B)	감면추계액(A-B)
2020	1,210,689	287,992	259,264	28,728
2021	1,239,561	298,722	273,010	25,712
증가율	2.3%	3.7%	5.3%	-10.5%

※ 연(年)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 10% 세액공제(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 한편, 소유분 자동차세 중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액은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차등 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고,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경우는 정액제(비영업용 승용 10만원)로 운영되고 있음.

자동차세 세율(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표준세율))

①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②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③ 승합자동차(이하 생략)

- 이는 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자 1991년부터 지방세법*에 신설된 ‘기타 승용자동차’의 정액 세율을 현행 전기차 등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 시행 1991. 1. 1.,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 현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장 많은 4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600cc초과 2,000cc 미만 구간의 ‘승용자동차’)의 연간 세액 약 40만원과 비교해 보면,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연간 10만원(정액)에 그치고 있는바, 차량의 가격이나 성능 등을 감안할 때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자동차세 부과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승용자동차 배기량별 점유 현황 >

(2021년 12월 1일 기준)

구분	합계	800cc 이하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500cc 이하	3000cc 이하	3000cc 이상
대수	1,360,146	482	11,381	297,986	544,302	232,217	144,300	129,478
점유비	100.0	0.0	0.8	21.9	40.0	17.1	10.6	9.5

※ 2021년 말 현재 ‘기타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등록 대수는 37,663대 수준으로, 이를 모두 1년 이상 보유한 출고 후 2년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라고 가정할 때, 현행 연간 자동차세(본세)는 37억 6천만원 수준이나, 이를 2000cc 미만 승용차 자동차세액(약 40만원)을 적용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는 150억 6천만원 수준으로 증가되어, 이로 인하여 약 113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나게 됨.

※ 행정안전부(관계부처 합동)는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2030년까지 친환경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는 계획(2021년 2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음(자동차세 세율 인상 언급 없음).

〈 서울시 자동차 연료별 등록 현황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대)

차종별	계	휘발유	경유	LPG	전기	CNG	하이브리드	수소
계	3,176,743	1,646,141	1,084,741	245,041	40,564	8,887	141,889	2,445
승용차	2,740,044	1,642,186	708,501	209,333	35,227	384	141,832	2,436
승합차	100,403	1,135	76,372	12,872	524	8,134	52	9
화물차	326,425	2,798	290,800	22,718	4,787	368	5	-
특수차	9,871	22	9,068	118	26	1	-	-

※ 출처: 서울특별시 누리집(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⑤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1조 8,243억원) 대비 13.9%(2,533억원) 초과 수납된 2조 776억원으로 전년(1조 9,428억원) 대비 6.9%(1,348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지방세수입의 8.0%를 차지하는 규모임.

〈 지방소비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예산대비		2020년 결 산 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18,243	20,776	2,533	113.9	19,428	1,348	106.9
소비지출분 (15 %)	10,745	12,718	1,973	118.4	11,453	1,265	111.0
취득세보전분 (6 %)	7,498	8,058	560	107.5	7,975	83	101.0

- 재무국은 본 세목의 초과세입 발생 원인으로 전년과 동일한 세율(21%)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등으로 부가가치세 세입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부가가치세 세입: 71.2조원, 전년 64.9조원 대비 6.3조원 증가

<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율 >

년 도	2010년	2014년	2019년	2020~ 2021년	2022년	2023년
세 율	6%p	11%p	15%p	21%p	23.7%p	25.3%p

- 지방소비세는 재화·용역의 공급, 수입 등에 과세하는 부가가치세(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 세목으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세율이 지속 인상*되고 있으며, 2021회계연도는 소비지출분(15%)과 취득세 보전분(6%)으로 구분하여 총 부가가치세의 21%를 지역별 안분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세목임.

< 지방소비세 세율 변동 내역 >

- **(도입)**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 및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세액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도입(2010)
- **(확대)**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재정보전('14) 및 1·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19~'20, '22~'23)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 (2014)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6%p(5%→11%) 인상
 - * 9억초과(4%), 9억이하(2%) → 9억초과(3%), 6~9억(2%), 6억이하(1%)
 - (2019, 2020)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한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19년 4%p(11%→15%) 인상, '20년 6%p(15%→21%) 인상
 - (2022)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 '2.7%p(21%→23.7%) 인상
 - * (2023) 1.6%p(23.7%→25.3%) 인상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

(국세) 부가가치세 79%		(지방세) 지방소비세 21%			
↓					
구분	안분방식				
6%p	취득세 감소분	지방교육세 감소분	지방교부세 감소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취득세 감소비율(98%) + 사회복지수요(2%)	취득세 감소비율	보통교부세 배분비율(19.24%) 시·도 몫 시·군·구 몫		보통교부금 배분비율(20.27%)
5%p	시·도 소비지출 x 가중치(1:2:3) 【시·도】 지방소비세				
10%p	① 전환사업 보전분(3.6조/정액)		② 재정조정분(0.9조/정액)		③ 잔여분
	시·도 (약2.8조)	시·군·구 (약0.8조)	조정교부금 (약0.8조)	교육전출금 (약0.1조)	시·도 소비지출 x 가중치(1:2:3)

- 다만,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방안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어, 해당 전환사업비 등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10%, '19년 4% + '20년 6%) 중에서 전환사업비 등 (4.5조원)을 선공제하고 잔여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 세율으로 교부 함으로써, 세율 인상 정도(10%)에 비해 실질 세입 징수액 증가율('20년 0.8%, '21년 6.9%)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 지방소비세 세입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세율)	연도별 현황					최근 5년 평균 ('17~'21)
	2017 (11%)	2018 (11%)	2019 (15%)	2020 (21%)	2021	
예산액	10,559	12,127	17,948	20,414	18,243	15,858
수납액	13,054	13,991	19,283	19,428	20,776	17,306
수납률(%)	123.6	115.4	107.4	95.2	113.9	109.1
전년 대비	징수액	2,131	937	5,292	145	1,348
	증감률	19.5	7.2	37.8	0.8	6.9

※ 2019년 대비 '20년도의 경우 세율이 6% 인상되었음에도, 세입이 전년 대비 0.8% 인상되는데 그치고 있음(같은 서울에서의 '21년은 부가가치세 세입 증대로 전년 대비 6.9% 세입 증가)

<지방소비세 개요 (2021회계연도 기준)>

-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납입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납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납부('21년 납입관리자 : 전라북도지사)

① 소비지출 비율('15%) 분

- '10.1.1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세목으로 부가가치세(국세)의 15% 적용[5%('18년)→9%('19년)→15%('20년)]
- 안분방법
 - 1) 전국지방소비세(5%) × 지역별 안분비율
 - 2) 전국지방소비세(10%) 중 4.5조원: 균특회계 전환사업 보전비율에 따라 지급
 - 3) 전국지방소비세(10%) 중 4.5조원 차감 후 잔액 × 지역별 안분비율

② 취득세 감면 보전(6%) 분

- '13.12.26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영구인하로 감면된 취득세 보전 성격
- 안분방법 : 전국지방소비세(6%)-[지방교부세(19.24%)+지방교육청 교부금(20.27%)] × 서울시 안분비율 = 지방소비세 세입

- 한편, 당초에는 2022년까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의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에 대한 전환사업비로 선공제하는 기한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21.12.7.)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되었는바,
- 이러한 지방재정권 침해에 대해 재무국의 적절한 대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안 중)**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

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에 활용되는 지방소비세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도록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p>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6. (생략)</p> <p>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른 금액</p> <p>8. (생략)</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법률 제16856호, 2019. 12. 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기한) 제17조의2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3조(발전기금 용도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기금 재원은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p>	<p>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 --</p> <p>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법률 제18545호, 2021. 12. 7.></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①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② (생략).</p> <p>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의 정부출연금은 7천500억원으로 한다.</p>

⑥ 레저세

- 레저세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427억원) 대비 89.7%(383억원) 부족 징수된 44억원으로 전년(229억원) 대비 80.8%(185억원) 감소한 수준임.

< 레저세 징수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예산대비		2020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계	427	44	-383	10.3	229	-185	-80.8
경 마	232	34	-198	14.7	128	-94	-73.4
경 룬	157	7	-150	4.5	81	-74	-91.4
경 정	38	3	-35	7.9	20	-17	-85.0

-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의 투표권 발매금액의 10%를 징수하는 세목으로,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월부터 경기 중단의 장기화와 장외발매소 폐쇄 등으로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최근 3년간 레저세 예산 대비 결산현황>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C=B-A	수납률 (B/A)
2021	427	427	44	-383	10.3
2020	1,249	1,249	229	-1,020	18.2
2019	1,310	1,310	1,282	-28	97.9

- 레저세 세입은 2020회계연도 세입결손(1020억원, 81.8%) 발생에 이어 2021 회계연도에도 89.7%(383억원)의 과다한 세입 결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상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사전에 세입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여지는 없었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⑦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010억원) 대비 17.3%(348억원) 초과 수납된 2,358억원으로 전년(1,846억원) 대비 27.7%(512억원) 증가한 수준이며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예산 결산율을 보이고 있음.

< 지난연도 시세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예산대비		2020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징수액 (B)	증가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지난년도시세	2,010	2,358	348	117.3%	1,846	512	127.7%

- 재무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징수활동 제한으로 가상화폐 압류, 수표 교환내역 조사 등 새로운 징수기법의 도입으로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목표(예산액)의 17.3%(348억원) 초과 달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결산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2021회계연도 지방세 지난년도수입의 ‘예산현액’(징수목표액) 설정 규모는 최근 5년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써 상대적 효과로 예산 수납률(결산율)이 상승한 것이라고 할 것임.
 - 이에 반해, 2021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총 체납액인 ‘징수결정액’(6,995억원(세무과 4,011억원, 38세금징수와 2,984억원))에 대한 징수율은 33.7%(2,358억원)에 그치고 있는바,
 - 결산 실적 제고를 위해 예산액(징수목표액)을 과소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향후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총 체납액 기준 예산액 규모 산정에 대한 제도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결산율 (B/A)
2021	2,010	2,010	2,358	348	117.3
2020	2,221	2,221	1,846	-375	83.1
2019	2,216	2,216	2,263	47	102.1
2018	2,366	2,366	2,003	-363	84.7
2017	2,333	2,333	2,094	-239	89.8

※ 2021년 징수 결정액(6,995억원) 대비 징수율은 33.7%(2,358억원)임.

○ 한편, 연도별 지방세 지난년도수입은 2천억원 내외로 비교적 일정하게 수납되고 있는 반면, 징수결정액(총체납액)은 크게 감소(2017년 1조 3천억원 → 2021년 7천억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징수결정액(총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크게 증가(2017년 15.8% → 2021년 33.7%)하고 있음.

- 이는,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2천 5백억원 수준의 결손처분* 규모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써 이에 따라 징수결정액(총 체납액)이 크게 감소하여 징수율이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바,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한다는 우려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2022.1.28.)으로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소멸시효 완성된 체납액은 “시효완성 정리”)

<최근 5년간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2021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예산	201,005	222,078	221,567	236,597	233,297
징수결정액	699,543	834,347	1,030,407	1,256,009	1,328,201
수납액	235,753	184,629	226,319	200,327	209,405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2021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결손처분액	49,702	245,339	314,213	383,785	257,982
다음연도이월액	414,088	404,379	489,875	671,898	860,814
징수율	33.70	22.13	21.96	15.95	15.77

- 또한, 불납결손 처분 후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된 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 결손처분액 1조 2,510억원에 대하여 34.7%(4,336억원)를 결손 취소하고, 취소금액의 33.7%(1,459억원)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불납결손 취소 및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결손처분액 A		1,436,130	245,339	314,213	383,785	257,982	234,811	
시+구	결손취소액 B	421,543	83,880	86,222	113,797	63,421	74,223	
	취소율 (B/A)	29.4	30.3	20.2	29.7	33.4	35.7	
	징수액 C	136,673	23,788	33,508	27,580	23,681	28,116	
	징수율	결손처분액 대비 (C/A)	9.5	9.7	10.7	7.2	9.2	12.0
		결손취소액 대비 (C/B)	32.4	28.4	38.9	24.2	37.3	37.9
시	결손취소액	266,613	59,826	53,376	84,751	27,630	41,030	
	징수액	54,194	9,804	16,972	12,082	5,795	9,541	
구	결손취소액	154,930	24,054	32,846	29,046	35,791	33,193	
	징수액	82,479	13,984	16,536	15,498	17,886	18,575	

- 불납결손이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 불명, 실익 없는 재산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된 지방세 중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수절차를 일지중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최근 5년간 불납결손처분(1조 2,510억원) 후 이를 취소하고 징수한 금액은 1,459억원(11.6%, 연평균 292억원)에 달하고 있음.

- 특히, 2021회계연도에는 결손처분액(497억원) 보다 결손 취소액이 2배(1,007억원)에 달하고 이에 대하여 38.8%(390억원)을 징수하였는바, 결손 처분 후 지속적인 재산조사 등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 결손처분한 세수가 사장되지 않도록 불납결손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담당 세무공무원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결손처분 절차에 지방세심 위원회의 심의 절차 마련 등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재무국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다음으로, 지방세 지난년도수입의 세세목별 결산 실적을 보면, 총 체납액(징수결정액) 중 지방소득세가 56.8%(3,970억원)를 차지하여, 징수액 또한 가장 큰 규모(746억원)를 차지(31.7%)하고 있음.
- 반면, 징수율(18.8%)은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미수납액(이월액)이 가장 큰 규모(2,926억원, 미수납률 73.7%)로 나타나, 지방소득세 독립세화(2015년)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의 체납 징수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국세에 앞서서 조세채권 확보 방안 마련 등 재무국의 특단의 노력이 요망 된다고 하겠음.

<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세세목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취득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지역)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징수결정액	6,995	553	154	3,970	1,035	0	371	357	66	489
(점유율)	100	7.91	2.20	56.75	14.80	0	5.30	5.10	0.94	6.99
수납액	2,357	243	54	746	621	0	190	184	27	292
결손액	675	62	20	298	54	0	172	15	27	27
미수납액	4,142	248	80	2,926	360	0	164	158	36	170
징수율	33.70	43.98	35.07	18.79	60.00	0	51.29	51.54	40.74	60.12
결손율	28.64	11.21	12.99	7.51	5.22	0	46.36	4.20	5.65	5.52
미수납율	59.22	44.85	51.95	73.70	34.78	0	44.20	44.26	60.23	34.76

<최근 5년간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세세목별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시세소계	예산	201,005	222,078	221,567	236,597	233,297
	징수결정액	699,543	834,347	1,030,407	1,256,009	1,328,201
	수납액	235,753	184,629	226,319	200,327	209,405
	결손액	49,701	245,339	314,213	383,785	257,982
	다음연도이월액	414,088	404,379	489,875	671,898	860,814
	징수율	33.70	22.13	21.96	15.95	15.77
취득세	징수결정액	55,307	55,176	75,234	81,385	92,159
	수납액	24,322	7,330	22,141	7,808	13,791
	결손액	6,215	20,149	17,927	25,433	20,688
	다음연도이월액	24,770	27,697	35,165	48,143	57,680
	징수율	43.98	13.28	29.43	9.59	14.96
주민세	징수결정액	15,383	15,834	16,782	17,320	16,915
	수납액	5,395	5,682	5,965	6,001	6,123
	결손액	1,987	2,244	3,228	2,788	2,394
	다음연도이월액	8,001	7,907	7,589	8,532	8,399
	징수율	35.07	35.88	35.54	34.65	36.20
지방소득세	징수결정액	396,990	541,450	674,864	839,199	893,623
	수납액	74,634	54,796	58,684	59,038	50,297
	결손액	29,778	208,848	260,371	282,820	194,052
	다음연도이월액	292,578	277,806	355,809	497,341	649,274
	징수율	18.80	10.12	8.70	7.04	5.63
자동차세	징수결정액	103,446	106,929	121,305	122,847	132,521
	수납액	62,061	62,443	69,934	67,061	72,767
	결손액	5,417	6,478	12,471	9,097	9,045
	다음연도이월액	35,967	38,008	38,900	46,689	50,709
	징수율	59.99	58.40	57.65	54.59	54.91
담배소비세	징수결정액	1	1	1	12,848	11,532
	수납액	0	0	0	0	0
	결손액	0	0	0	12,847	11,531
	다음연도이월액	1	1	1	1	0
	징수율	0.00	0.00	0.00	0.00	0.00
재산세 (특별시분)	징수결정액	37,115	30,032	40,567	60,091	58,425
	수납액	19,038	12,442	17,584	14,118	15,442
	결손액	1,721	1,760	7,626	22,543	5,462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다음연도이월액	16,357	15,830	15,357	23,429	37,521
	징수율	51.29	41.43	43.35	23.49	26.43
	징수결정액	35,726	32,381	38,643	48,255	48,374
	수납액	18,359	15,241	19,044	17,182	18,279
	결손액	1,548	1,524	4,617	11,278	4,240
	다음연도이월액	15,818	15,617	14,982	19,796	25,855
지역자원 시설세	징수율	51.39	47.07	49.28	35.61	37.79
	징수결정액	6,633	6,427	7,956	8,357	9,637
	수납액	2,702	2,213	3,173	2,845	3,609
	결손액	375	343	893	908	1,130
	다음연도이월액	3,556	3,871	3,890	4,605	4,897
	징수율	40.74	34.43	39.88	34.04	37.45
지방교육세	징수결정액	48,943	46,116	55,056	65,707	65,015
	수납액	29,242	24,482	29,795	26,274	29,097
	결손액	2,660	3,993	7,079	16,071	9,440
	다음연도이월액	17,041	17,642	18,182	23,362	26,479
	징수율	60.12	53.09	54.12	39.99	44.75

※폐지되거나 변경된 세목은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기준 세목으로 작성되었음.

- 마지막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실적(1,919백만원)을 보면, 전년 대비 지방세 체납 징수액은 17.2%(347억원) 증가하여, 포상금은 12.4%(211백만원) 증가하였고, 이 중 서울시는 38.2%(174백만원), 자치구는 3.0%(37백만원) 증가하여, 서울시(38세금징수과) 징수포상금 수준이 높게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지난연도 시세 징수 대비 징수포상금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징수액 (B)	예산현액 대비		징수포상금(백만원) (증가율)		
			증감액 (B-A)	증감률	계	시	자치구
2021	201,005	235,753	34,748	17.2	1,919 (12.4)	629 (38.2)	1,290 (3.0)
2020	222,078	184,628	-37,450	-16.9	1,708 (△16.6)	455 (△6.6)	1,253 (△19.8)
2019	221,567	226,319	4,752	2.1	2,049 (3.6)	487 (22.1)	1,562 (△1.0)
2018	236,597	200,326	-36,271	-15.3	1,977 (△3.9)	399 (△3.2)	1,578 (△4.1)
2017	233,297	209,404	-23,893	-10.2	2,058	412	1,646

- 다만, 서울시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징수액의 80% 이상의 수준을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해 볼 때,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 부여를 통한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 포상금 지급 기준에 현행 징수금액 외에도 징수 건수를 반영하여 징수 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등 포상금 지급 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 세외수입 결산

-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539억원) 대비 23.1%(586억원) 부족 징수된 1,954억원으로 과다하게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 결산액(1,802억원) 대비 8.4%(151억원) 증가한 수준임.

〈2021회계연도 재무국 세외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예산대비		2020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세 외 수 입	253,930	195,352	△58,578	76.9%	180,233	15,119	108.4%

※ 예산현액(2,539억원) 규모는 전년(2,287억원) 대비 11.0%(252억원) 증가한 수준임.

※ 징수결정액(2,085억원) 대비 징수율은 93.7%(1,954억원)로 결손처분액(8억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23억원 수준임.

1) 과다한 세입결손 발생

- 재무국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80% 미만으로 저조한 세입과목은 ‘기타사용료’(71.0%)와, 전년에 이어 ‘공유재산매각수입’(14.4%)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세외수입 예산 대비 수납률 80% 미만 과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 (D)	미수납액 (B-C)	수납률	
						예산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C/B)
세외수입	253,930	208,462	195,352	821	12,289	76.9	93.7
경상적세외수입	33,197	59,798	59,693	-	105	179.8	99.8
사용료수입	1,186	910	842	-	69	71.0	92.5
기타사용료	1,186	910	842	-	69	71.0	92.5
임시적세외수입	220,251	146,643	133,990	821	11,832	60.8	91.4
재산매각수입	106,512	15,352	15,318	-	34	14.4	99.8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6,512	15,352	15,318	-	34	14.4	99.8

가) 기타사용료

- ‘기타사용료’ 결산액은 예산현액(11억 8천 6백만원) 대비 29.0%(3억 4천 4백만원 세입결손) 부족 징수된 8억 4천 2백만원임.
- 세입 결손 발생 사유는 시유재산(행정재산, 마포구 도화동 1-408 외 3필지)에 경의선 철도 사업이 시행(2014년)됨에 따라 부지 위임 재산관리관(마포구)이 사업 시공사(주)공덕경우개발)에게 사용료를 부과해 오다가, 사업 준공(2017년 12월)과 함께 해당 부지가 국가에 귀속(「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되었음에도 계속 부과한 사용료를 2021회계연도에 일괄 환급(344,201,340원)함으로써 발생한 것임.

<기타사용료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 (D)	미수납액 (B-C)	수납률	
						예산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C/B)
세외수입	253,930	208,462	195,352	821	12,289	76.9	93.7
경상적세외수입	33,197	59,798	59,693	-	105	179.8	99.8
사용료수입	1,186	910	842	-	69	71.0	92.5
기타사용료	1,186	910	842	-	69	71.0	92.5

- 다만, 시유재산이 국가에 귀속 된 후에도 3년 이상 사용료를 계속 부과하였다는 것은 시유재산의 관리가 면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한 재산총괄관으로서의 재무국의 재발 방지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임.
- 또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본 세입을 계상하고 있는 과목인 ‘기타 사용료’는 청사·공원·체육시설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과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을 계상하는 예산과목으로,
 - 본 세입의 발생은 시유재산(행정재산)에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써, 이 경우는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211-02)’에 계상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기타사용료’ 세입에 계상하였는바, 기준에 맞는 예산편성과 지속적인 세입결손 방지를 위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연도별 기타사용료 징수 실적 (단위 :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1,056,956	1,809,273	1,102,287	1,961,260	2,091,754	2,153,619	2,301,096	1,450,915	1,185,861	841,660
결산률: 171.2%		177.9%		103.0%		63.1%		71.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100 지방세수입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1 국유재산임대료	1.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2.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2.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212 사용료수입		
		212-01 도로사용료	1. 도로점용료수입 2. 도로통행료수입
		212-02 하천사용료	1. 하천점용료수입 2. 하천수사용료수입
		212-03 하수도사용료	1. 하수도점용료수입 2. 하수도사용료수입
		212-04 상수도사용료	1. 상수도요금수입
		212-05 공유수면사용료	1. 공유수면점용료 2. 공유수면사용료
		212-06 시장사용료	1.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
		212-07 입장료수입	1.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
		212-08 주차요금수입	1. 주차장법 등에 의한 주차요금수입
		212-09 기타사용료	1.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결산액은 예산현액(1,065억 1천 2백만원) 대비 85.6% (911억 9천 4백만원 세입결손) 부족 징수된 153억 1천 8백만원임.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 (D)	미수납액 (B-C)	수납률	
						예산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C/B)
세외수입	253,930	208,462	195,352	821	12,289	76.9	93.7
임시적세외수입	220,251	146,643	133,990	821	11,832	60.8	91.4
재산매각수입	106,512	15,352	15,318	-	34	14.4	99.8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6,512	15,352	15,318	-	34	14.4	99.8

- 공유재산매각수입 부족 징수(85.6%, 912억원 부족) 사유는 최근 3년간 평균 매각수입에 지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편성한 일반징수 대상 매각수입(예산 413억원)에서 일부(153억원, 37.0%)만 수납되고, 송파 위례택지개발 사업 관련 손실보상금(652억원) 특별징수분 전부가 사업 지연으로 미수납된 것임.
- 한편, 최근 5년간 본 세입의 결산 실적을 보면, 평균 2,858억원의 막대한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음.

◇ 연도별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징수 실적 (단위 :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511,875,190	49,931,454	514,960,932	109,977,946	472,985,620	29,974,839	57,956,955	30,109,992	106,511,747	15,317,705
결산률: 9.8%		21.4%		2.3%		52.0%		14.4%	

- 재무국 세외수입 결손 발생액은 586억원으로 예산현액의 23.1%에 달하고 있고, 세입의 결손은 시급성을 요하는 시민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예산 효율성 및 적시성을 저해하는바, 재무국은 세입예산 편성 주요 지표 및 변수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입추계의 정확도 제고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결산

-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결산액은 예산현액(3조 8,176) 대비 100.0% 징수되었으며, 전년 결산액(2조 5,652억원) 대비 48.8%(1조 2,524억원) 증가한 수준임.

1) 잉여금의 증가

- 재무국의 2021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3조 4,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50.4%(1조 1,609억원) 증가한 수준임.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 (B)-(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17,624	3,817,625	3,817,625	-	-	0	100.0	100.0
보전수입등	3,817,624	3,817,625	3,817,625	-	-	0	100.0	100.0
잉여금	3,465,276	3,465,276	3,465,276	-	-	0	100.0	100.0
순세계잉여금	887,852	887,852	887,852	-	-	0	100.0	100.0
법정잉여금	2,577,424	2,577,424	2,577,424	-	-	0	100.0	100.0

- 주요 잉여금 증가 사유는 2020회계연도에 주로 지방세수입에서 발생한 초과세입 2조 9,298억원과 5,355억원에 달하는 집행잔액 발생에 의한 것임.

〈최근 5년간 연도별 재무국 결산상 잉여금 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결산상 잉여금 = (A) + (B)		초과세입금 (A)	세출예산 집행잔액 (B)
	금액	증가율		
'21년 편성	3,465,276	50.4	2,929,780	535,496
'20년 편성	2,304,433	7.6	1,840,672	622,437
'19년 편성	2,141,910	△11.9	1,617,576	599,989
'18년 편성	2,431,396	18.1	1,928,394	564,011
'17년 편성	2,058,790	21.9	1,720,219	399,389

- 과도한 잉여금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세입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와 함께 세출예산의 경우는 실소요예산의 편성과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조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 세입예산 미편성(국고보조금사용잔액)

- 지방재정법(제34조)에서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재무국 부서별 세외수입 발생 형태를 보면,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이 발생(530천원)하고 있는바,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편성 일반 지침’에 따라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세입예산 미편성 수납>

(단위 : 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530,000	530,000	-

마. 재무국 세입예산 종합 분석

- 종합적으로, 세입결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예산과목의 경우는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에 따른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 특히, ‘취득세(58.3%, 2조 9,511억원 초과 징수)’ 및 ‘지방소비세(42.9%, 2조 2309억원 초과 징수)같이 과다하게 초과세입이 발생하거나, ‘레저세(89.6%, 383억원 부족 징수), ‘공유재산매각수입금(85.6%, 911억원 부족 징수) 등과 같이 지나치게 크게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에 따른 것으로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침해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제한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및 필요 사업의 지연과 별도의 예산조정 등을 수반하게 되어 행정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바,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재무국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하겠음.

2. 세출결산

○ 2021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액은 예산현액(3조 1,290억 5천 7백만원) 대비 98.6%(3조 852억 4천 5백만원)를 집행하여, 불용액은 435억 4천 7백만원으로 전년(465억 1천 2백만원) 대비 △6.4% (△29억 6천 5백만원) 감소한 수준임.

※ 2020년도 결산액은 예산현액(2조 8,857억원) 대비 98.4%(2조 8,392억원) 집행, 불용 1.6%(465억 1천 2백만원)

- 다만, 자치구 교부금(2조 2,921억원(재정보전금, 시세징수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사업 예산현액(8,370억원) 대비 불용률은 5.2%로 서울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률 1.6%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결산액은 예산현액(8,164억원) 대비 불용 5.3%(421억원)

〈 2021회계연도 재무국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총 예산	3,129,057	3,085,245	229	35	43,548	1.4
일반예산계	803,868	761,344	-	30	42,494	5.3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801,643	759,476	-	30	42,137	5.3
기본경비	2,225	1,868	-	-	357	16.0
재무활동	3	3	-	-	-	-
사업예산계	2,325,186	2,323,898	229	5	1,054	-
일반사업비	33,097	31,809	229	5	1,054	3.2
자치구교부금	2,292,089	2,292,089	-	-	-	-
재정보전금	1,781,631	1,781,631	-	-	-	-
징수교부금	510,458	510,458	-	-	-	-

가. 예산의 전용·변경사용

1) 예산의 전용

○ 재무국(재무과)의 2021회계연도 예산의 전용(통계목간)은 2건에 17억 2천 8백만원으로 전년(2건 6억 1천 2백만원) 대비 182.4%(11억 1천 6백만원) 증가한 수준임.

※ 2020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2건에 6억 1천 2백만원임.

<2021 회계연도(일반회계) 전용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번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예산현액	집행잔액	승인일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보수 (101-01)	540,406	1,407	-	538,999	21,413 (4.0)	21-03-23 (재무과)
		성과상여금 (303-02)	22,024	-	1,407	23,431	249 (1.1)	
1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보수 (101-01)	539,380	△322	-	539,058	21,413 (4.0)	21-11-22 (재무과)
		직급보조비 (204-02)	19,439	-	322	19,761	51 (0.3)	

○ 2021년 3월 예산전용 건은 14억 7백만원으로 “인력운영비” 사업의 ‘인건비(편성목) 중 ‘보수(통계목)’에서 같은 사업 내 ‘포상금(편성목) 중 ‘성과상여금(통계목)’으로 전용한 것으로, ‘성과상여금’은 규정 개정*에 따른 부족분을 전용사용하고도 예산현액(234억 5천 4백만원) 대비 2억 4천 9백만원(1.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처리지침」 개정(2021.1.25.): 2021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 기준일 이전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제1항제1호에서는 인건비(기준인건비, 총액인건비 포함) 등을 제외한 예산은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63쪽)에서는 기준인건비 범위(보수,

가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인력운영비의 범위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목 그룹	편 성 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 같은 해 11월 예산 전용 건은 3억 2천 2백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내 ‘보수’에서 ‘직급보조비’로 전용한 것으로, 직급보조비는 지급대상 현원 증가에 따라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보수’에서 전용 사용하고도 예산현액(197억 1천만원) 대비 5천 1백만원(0.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예산편성 당시(‘20.10.) 정·현원을 고려하여 8,445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지급대상자가 증가(8,569명 → 8,736명, 증 167명)하였음.

○ 이처럼 2건의 예산을 전용사용하고도 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 전용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하지 못한 추계에 따른 것으로 재무국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인력운영비” 사업 중 ‘보수’ 예산(5,131억원)은 예산 전용을 통해 총 2건의 17억 2천 8백만원 감액하고도 214억 1천 3백만원(4.0%)의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였는바, 정밀한 예산 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되는 부분 이라고 하겠음.

< 인력운영비 결산 내역(2021년)> (단위: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총 계	801,642	759,477	42,165	94.7
보수(일반직)	539,058	517,617	21,441	96.0
기타직 보수(임기제)	114,737	107,778	6,959	93.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4,632	91,168	13,464	87.1
직급보조비	19,761	19,710	51	99.7
성과상여금	23,454	23,204	250	98.9

2) 예산의 변경사용

○ 재무국(38세금징수과)의 2021회계연도 예산의 변경사용은 1건에 256만원으로,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사업의 ‘포상금(303-01)’을 ‘기타보상금(301-12)’로 예산 변경사용(2021.12.01.)하였음.

※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인(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예산 부족분

<2021 회계연도(일반회계) 변경사용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연 번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예산현액	집행잔액	승인일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포상금 (303-01)	1,929,624	△2,556	-	1,927,068	3,750	'21-10-21 (38세금징수과)
		기타보상금 (301-12)	5,000	-	2,556	7,556	1	

※ 예산의 변경사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사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사항으로써, 예산을 전용사용하고도 과도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인력운영비”의 ‘보수’는 예산 전용에 따른 감액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집행잔액(214억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그룹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 사항임.

○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예산의 전용 사용·변경사용에 있어서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일 뿐 아니라, 보다 긴급한 사업에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적 예산 운영 행태로써 재무국의 예산의 변경 제도 운영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인력운영비(보수) 관련 예산 전용·변경사용 현황>

◇ 전용

○ 2019 회계연도(일반회계) : 전용 3건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총 3건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19,809,990	391,878		2019-03-22	519,418,112		
	303-02 성과상여금	20,614,106		391,878		21,005,984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19,418,112	116,000		2019-03-28	519,302,112		
	303-02 성과상여금	21,005,984		116,000		21,121,984	21,095,987	25,997 (0.1)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19,302,112	1,370,860		2019-11-25	517,931,252	488,925,367	24,252,424 (4.6)
	204-02 직급보조비	17,990,870		1,370,860		19,361,730	19,328,999	32,731 (0.1)
○ 2020 회계연도(일반회계) : 전용 2건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총 2건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35,269,902	251,084		2020-03-23	534,658,233	509,354,714	25,303,518 (4.7)
	303-02 성과상여금	21,811,852		251,084		22,062,936	21,962,851	100,084 (0.5)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35,018,818	360,585		2020-11-19	534,658,233	509,354,714	25,303,518
	204-02 직급보조비	19,367,767		360,585		19,728,352	19,528,961	199,390 (1.0)

○ 2021 회계연도(일반회계) : 전용 2건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총 2건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40,406,378		1,406,550	2021-03-23	538,999,828	517,616,568	21,413,097 (4.0)
	303-02 성과상여금	22,024,312	1,406,550			23,430,862	23,203,976	248,750 (1.1)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39,380,088		321,850	2021-11-22	539,058,238	517,616,568	21,413,097 (4.0)
	204-02 직급보조비	19,439,096	321,850			19,117,246	19,710,193	50,753 (0.3)

◇ 변경

○ 2019 회계연도(일반회계) : 변경1건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총 1건								
인력운영비	보수	517,931,252	4,755,206		2019-12-16	513,176,046	488,925,367	24,252,424 (4.6)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91,455,498		4,755,206		96,210,704	95,476,749	733,955 (0.7)

○ 2020 회계연도(일반회계) : 변경 2건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총 2건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201-01 사무관리비	90,300	107	-	2020-11-27	90,193	87,511	2,682 (2.9)
	204-03 특정업무경비	69,000	-	107		69,107	69,107	- (0.0)
지방세심의위원회 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92,500	467	-	2020-12-01	92,033	74,671	17,362 (18.9)
	204-03 특정업무경비	34,800	-	467		35,267	35,266	1 (0.0)

○ 2021 회계연도(일반회계) : 변경1건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총 1건								
시세입 및 체납징수 강화	포상금 (303-01)	1,929,624	△2,556	-	'21-10-21 (38세금징수 과)	1,927,068	1,923,318	3,750 (0.2)
	기타보상금 (301-12)	5,000	-	2,556		7,556	7,555	860 (0.0)

나. 20% 이상 불용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 재무국 세출예산 결산 결과 집행잔액은 435억 4천 7백만원(3조 1,290억 5천 7백만원 대비 1.4%)으로 전년(1.6%, 465억 1천 2백만원) 대비 29억 6천 5백만원 감소한 수준임.
- 재무국 사업별 통계목별 20% 또는 1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총 41개 사업(부서별 기본경기 포함) 중 15개 사업의 24개 통계목에서 432억 6천 1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총 집행잔액(435억 4천 7백만원)의 99.3%에 달하고 있음.

< 2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사업(통계목별)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	불용		불용사유
				금액	비율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무관리비	36	9	27	75.0	자재창고 반납물품 매각, 폐기 미실시 로 운반비 등 관련 예산 미집행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	13	5	27.8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행저조
	자산및물품취득비	616	375	241	39.1	행정사무물품 교체 수요 저조
2020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9	13	5	26.3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행저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연금지급금	335	223	112	33.4	퇴직금 수요 조사보다 더 적은 퇴직자 발생 (조사 결과 44명 / 퇴직 22명)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사무관리비	101	70	31	30.8	이용수수료 납부 건수 감소 (4,186건 → 2,672건)
기본경기	국내여비	167	85	82	49.0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출장 자 제로 집행저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412	1,168	244	17.3	인사이동 등 현원 차이에 따른 집행 잔 액 발생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보수	539,058	517,617	21,441	4.0	인사이동 등 현원 차이에 따른 집행 잔 액 발생
	기타직보수	114,737	107,778	6,959	6.1	
	무기계약직근로자보 수	104,632	91,168	13,465	12.9	
	성과상여금	23,454	23,204	249	1.1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공공운영비	1,269	1,144	125	9.8	시유재산 보험료 신규 수시신청분 및 예비분 집행 잔액
	기타부담금	130	61	69	53.2	국가에 교환처분한 임시정부기념관 건 립 부지 폐기물 처리 비용의 집행 잔액
계약심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9	11	18	61.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원가분석자문 회의 개최 감소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	불용		불용사유
				금액	비율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37	69	69	50.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개 세무법정 미개최
세무공무원정책토론회	사무관리비	1	-	1	100.0	코로나19에 확진자 증가에 따른 행사 미실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무관리비	14	9	4	32.0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 미실시
	국내여비	1	0.08	1	94.4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치구 지도점검 횟수 감소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사무관리비	18	6	12	67.9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 감소
	전산개발비	388	227	63	16.3	낙찰 차액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사무관리비	97	77	21	21.5	기존 문자서비스의 카카오톡 알림톡 전환, 고지 정보 확인 및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매체 증가에 따른 건수가 감소되어 비용이 절감 됨
차세대지방세입정보 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연구용역비	484	308	44	9.0	낙찰 차액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3	2	1	37.3	-고지서 제작비 집행 잔액 -대면 제안서평가를 코로나19로 서면으로 진행하여 집행액 감소

○ 특히 재무국의 1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인력운영비(통합편성)’ 421억 3천 6백만원에 포함된 4개 사업*으로, 427억 3천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체 불용액(435억 4천 7백만원)의 98.1%를 차지하고 있는바, 재무국은 효율적 예산운형을 위하여 과도한 불용 발생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284백만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112백만원), 인력운영비(통합편성)(42,136백만원),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203백만원)

< 2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불용 사업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재무국	804,921	762,033	42,857	5.3
재무과	802,874	760,280	42,564	5.3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796	511	284	35.7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335	223	112	33.4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101	70	31	30.8
	인력운영비(통합편성)	801,643	759,476	42,136	5.3
자산관리과		1,816	1,614	203	11.2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816	1,614	203	11.2
계약심사과		43	25	18	41.9
	계약심사 업무추진	43	25	18	41.9
세제과		188	115	73	38.8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87	115	72	38.4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	-	1	100.0

다.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과다 불용

○ “인력운영비(통합편성)”는 시 본청 및 사업소 전체 직원(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 지급에 대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8,016억원 중 421억원 (5.3%)을 불용처리 하였음.

※ 인력운영비 불용액 442억원 중 50.8%(214억원) 통계목 ‘보수’에서, 32.1% (135억원)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차지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인력운영비의 범위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목 그룹	편성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 최근 3년간 인력운영비 불용 현황 > (단위 : 억원)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2021			2020			2019		
	예산액	불용액	비율	예산액	불용액	비율	예산액	불용액	비율
합 계	8,016	421	5.3%	7,833	441	5.6%	7,350	347	4.7%
보수	5,391	214	4.0%	5,346	253	4.7%	5,132	243	4.7%
기타직보수	1,147	70	6.1%	1,051	26	2.5%	962	7	0.7%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046	135	12.9%	1,018	159	15.6%	851	96	11.3%
직급보조비	197	0.5	0.3%	197	2	1.0%	194	0.3	0.2%
성과상여금	235	2	1.3%	221	1	0.5%	211	0.3	0.1%

- 재무국은 ‘인력운영비’ 편성 당시의 현원과 인사이동, 휴직·복직·퇴직 등으로 인한 근무자 수 차이가 발생하여 집행잔액(5.3%)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19년 347억원, 2020년 441억원, 2021년 421억원의 막대한 규모의 불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는바,
 - 이는 주먹구구식 인력 수급 계획과 면밀한 산출기초 없는 전례답습적 예산 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인력 수급 계획, 급여 체계 변경 계획 등 관련 정책을 미리 살펴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잔액 발생

- 재무국의 2021회계연도 중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은 총 6개이며, 이 중 “고액 체납시세 징수” 사업 ‘공공운영비’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집행잔액(628만원)이 발생하였음.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집행.불용> (단위 : 천원, %)

연번	통계목	당초 예산액	추가경정 예산액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율	집진액발생 사유
1	재정보전금(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	1,675,686	105,944	1,781,630	-	-	-
2	징수교부금(징수교 부금)	407,378	103,080	510,458	-	-	-
3	고액채납시세징수 (사무관리비)	141,200	20,000	161,200	-	-	-
4	고액채납시세징수 (공공운영비)	70,000	30,000	100,000	6,280	6.3	- 부서 보유 관용차량 중 1대 교체로 차량 수리비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차량 연료비 등 유지비 감소
5	물품구매 및 재무 관리 효율화(국외업무여비)	35,000	-	-	-	-	-
6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사무관리비)	2,500	-	-	-	-	-

- 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거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도 집행 잔액을 발생시키는 것은 주먹구구식 사업 계획에 따른 것이며, 미집행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예산 운영 행태로써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재무국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마.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전액 불용)

○ 재무국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6개과에서 25개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28억 3천 3백만원 대비 9.8%(2억 7천 8백만원)를 불용 처리 하였음.

- 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 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 편성을 지양해야 하며, 예산 낭비의 대표적 요인으로서 예산편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예산과목의 하나라고 할 것임.

○ 한편, 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전액을 불용처리한 경우는 3건에 645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경비를 대부분 미편성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부분 감액하였음에도, 워크숍 개최 비용을 편성하고 이를 전액 불용하였는바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할 것임.

< 예산현액 전액 불용(산출기초) 내역 > (단위 : 천원, %)

부서	세부사업명	산출기초	예산현액	불용률	사유
재무과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자재창고 유지관리비	2,500	100.0	자재창고 사용 물품 여유분 존재로 별도 유지비 미발생
세제과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계약심사담당공동연수개최	1,200	100.0	코로나19에 확산에 따른 워크숍 미실시
세무과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CI 인증 수수료	2,750	100.0	과납되었던 비용에서 총당 처리되어 수수료 지급 미발생

바. 사고이월

○ 재무국 2021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2건에 2억 2천 9백만원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사업의 ‘전산개발비’(9천 7백만원)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사업의 ‘연구용역비’(1억 3천 2백만원)에서 발생하였음.

<2021회계연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

연번	과목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871,421	535,150		229,350	106,921
1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전산개발비	387,651	227,150		97,350	63,151 (35.0%)
2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연구용역비	483,770	308,000	-	132,000	43,770 (42.6%)

※ 전년 이월사업비 없음.

1)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 본 사업은 ‘부동산 가격 공시지원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계약상대방(지노 시스템) 책임으로 연내 준공이 어렵게 되어 기 지급한 ‘전산개발비’ 선급금을 제외한 9천 7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사업개요

- 사업명: 부동산가격공시지원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2021.3.18. ~ 2021.11.30.
※ 준공기한 변경 : 2021.10.13. → 2021.11.30. (48일 연장)
- 총사업비: 금405,651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고이월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A) ※'19사고이월액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출액 (D)	사고이월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387,651,000	381,802,000	324,500,000	227,150,000	97,350,000 (0)	63,151,000
전산개발비	387,651,000	381,802,000	324,500,000	227,150,000	97,350,000 (0)	63,151,000

- 다만, 예산현액의 24.0%(9천 7백만원)을 사고이월하고도 예산현액(4억 5백만원) 대비 18.6%(7천 5백만원)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재무국은 사업 추진 시 주기적인 사업 진행 정도의 점검 및 예산 관리를 수행하여 예산 조정 등을 통해 해당연도에 집행 가능 예산만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됨.

2)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 본 사업은 차세대 지방세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및 운영 전환(행정안전부)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 21.3월 발주 예정이었던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구축 사업 지연(21.10월)됨에 따라, 8개월로 사업기간을 정한 본 사업의 발주도 지연되어 당해년도 사업 종료가 불가능하게 되어 연구용역비 선금금 3억 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천 2백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사업이 준공(2022년 6월 예정) 시 집행할 예정임.

□ 사업개요

- 사업명: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 사업기간: 21.10.20 ~ 22.6.16. ('21.12월 현재 공정률 25%)
- 총사업비: 금468,786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고이월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A) ※'19사고이월액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출액 (D)	사고이월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483,770,000	440,000,000	440,000,000	308,000,000	132,000,000 (0)	43,770,000
연구용역비	483,770,000	440,000,000	440,000,000	308,000,000	132,000,000 (0)	43,770,000

- 다만, 본 사업 또한 예산현액의 26.2%(1억 3천 2백만원)를 사고이월하고도 예산현액(5억 4백만원) 대비 8.8%(4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나, 지출원인 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사고이월은 단지 해당연도 편성예산의 미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시기 지연을 초래하고, 그 지연의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재무국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계획과

집행의 점검을 통하여 불필요한 이월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수석전문위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